

## 기록물평가심의회운영규정

제정 : 2016.09.01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2.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평가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심의회 구성) ① 평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교직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0. 03. 01.>

③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2명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01>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간사는 사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03. 01., 2022. 10. 01.>

제4조(평가심의회 개최·운영) ① 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평가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12. 0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평가심의회 위원장은 평가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내용) 평가심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평가 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보존기간 경과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